2022년도 국외단기훈련
부처특화/협업과정

국외단기훈련 결과보고서

과 제 명	법률구조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및 제도 통합 방안 연구

2023. 1.

법무부

목 차

Ⅰ. 국외훈련결과 요약 ····· 1

Ⅱ. 국외훈련 개요 ····· 4

1. 훈련 목적 ····· 4
2. 훈련국 선정 사유 ····· 5
3. 훈련 참여자 및 역할분담 ····· 7
4. 훈련 세부일정 ····· 7
5. 호주의 법률구조제도 소개 ····· 8
6. 훈련기관 소개 ····· 11

Ⅲ. 훈련내용 및 논의사항 ····· 14

1. 뉴사우스웨일즈주 법률구조기구 ····· 14
2. 퀸즈랜드주 법률구조기구 ····· 23
3. 빅토리아주 법률구조기구 ····· 29

Ⅳ. 정책제언 ····· 35

Ⅰ 국외훈련결과 요약

<table>
<tr><td>훈련자</td><td colspan="3"><table><tr><th>부처명</th><th>부서명</th><th>직급</th><th>성명</th></tr><tr><td rowspan="4">법무부</td><td rowspan="4">인권구조과</td><td>4급</td><td>반준성</td></tr><tr><td>7급</td><td>강도윤</td></tr><tr><td>7급</td><td>강성민</td></tr><tr><td>7급</td><td>하태균</td></tr></table></td></tr>
<tr><td>훈련국
(도시)</td><td>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td><td>훈련
기간</td><td>’22. 12. 3. ~ 16.</td></tr>
<tr><td>훈련
기관</td><td>1. Legal Aid Newsouthwales
2. Legal Aid Queensland
3. Victoria Legal Aid</td><td>훈련
구분</td><td>단기
(부처맞춤형)</td></tr>
<tr><td>훈련
목적</td><td colspan="3">법률구조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원스톱 연계시스템 구축 및 제도 통합 방안 연구</td></tr>
<tr><td>내용</td><td colspan="3">1. 훈련목적
□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국정과제인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구조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연구 중임
□ 호주는 1942년 연방정부 소속 Legal Service Bureau를 설립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법률구조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각 주정부 소속의 독립적인 법률구조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 법률구조기구와 연계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
□ 호주의 법률구조제도 및 민간 법률구조기구와 연계·협력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 민간 법률구조기구와 연계·협력 방안 및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위한 대상 범위·조정에 대한 정책 설계시 참고할 예정

2. 훈련 주요내용
□ Legal Aid 운영
ㅇ 호주 전역에 총 8개 주별로 Legal Aid를 설립·운영 중
(Victoria, Newsouthwales,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Tasmania, South Australia)</td></tr>
</table>

	ㅇ 각 기관들은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나, 자체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등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독립적임 □ 법률구조제도 운영 ㅇ 법률구조는 가정법, 형사법, 민사법 등 법률에 대해 실시되며 법률상담, 소송대리, 국선변호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임 ㅇ 법률교육을 사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인식하여 각 주마다 민족커뮤니티를 대상으로한 교육 실시,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ㅇ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정보의 제공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여 법률정보 및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률구조대상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하여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각 Legal Aid에서는 홈페이지 접속횟수와 인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함) □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ㅇ 법률구조사건 배당 시 ① 자체(In-House)변호사, ② 민간변호사, ③ 지역법률커뮤니티, ④ Probono변호사가 상호 협력함 - 자체변호사 : 자체변호사는 Legal Aid 소속 변호사(In-house)를 의미하며 법률구조 신청 시 요건을 심사한 후 기본적으로 자체변호사가 법률구조사건을 처리 - 민간변호사 : 민간로펌에 소속되어있는 변호사로 Legal Aid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 후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함, 민간변호사가 접수한 사건 중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한 Legal Aid의 요건 심사를 받은 후 처리하거나 Legal Aid 접수 사건 중 전문성이나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민간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자체변호사와 민간변호사는 2:8정도의 비율로 사건을 처리함)

- 지역법률커뮤니티 : 지역법률커뮤니티는 Legal Aid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음, 또한 상법, 고용법 등 Legal Aid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률이 대상이거나 Legal Aid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건들을 주로 연계하여 처리함

- Probono 변호사 : Probono는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변호를 하는 것으로 일정 시간이 의무임, 법률구조가 필요하나 자체변호사, 민간변호사, 지역커뮤니티법률센터 모두 사건을 처리 할 수 없을 때 활용함, 다만 봉사활동이라는 특성상 비교적 간단한 법률상담 정도 수준의 지원이 한계임

ㅇ 법률구조기구간 연계협력

- 호주 전역에 있는 8개의 Legal Aid를 대표하는 National Legal Aid가 있음. 정부에서는 Legal Aid와 협력이 필요 시 National Legal Aid를 통하여 소통하며, National Legal Aid는 연 2~3회 정도 규정 개정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주재하며 Legal Aid의 의견을 대표하여 전달함

ㅇ Access Point 운영 : 호주는 큰 영토 대비 인구밀도가 낮아 전 지역에 Legal Aid의 지부를 설치할 수는 없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법률커뮤니티 등 민간기구와 협력하여 사건 접수 및 상담 제공 등 기능을 가진 Access Point를 설치하여 법률구조 접근성을 높임(Legal Aid QLD는 14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지는 42개의 Access Point를 운영 중)

3. 정책제언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민간법률구조기구와 연계·협력 강화 추진
- 계약변호사 제도 도입 검토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플랫폼 역할 강화 필요

ㅇ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 양질의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ㅇ 법률구조기구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 필요

Ⅱ 국외훈련 개요

1. 훈련 목적

□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 제도를 운영 중임

□ 인권구조과는 「법률구조법」('87. 7. 제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는 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총 7개 법률구조 수행 법인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홈닥터' 제도를 2012년도 20명을 시작으로 현재 65명까지 확대하였음

□ 그러나, 법률구조 기구·서비스가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국민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불편한 측면이 있음

※ 현행 법률구조 제도 및 운영주체

법률구조 제도	근거법령	운영주체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법원
헌법재판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국선변호인	성폭력처벌법	검찰
피고인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법원
법률구조	법률구조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홈닥터	-	법무부
마을변호사	-	

□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구조 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

□ 현재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가 법률구조기구와 민간 법률구조기구와의 연계 방식 및 연계 범위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하고, 사회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위한 민간 법률구조기구와의 협조 및 법률구조 지원 범위 조정 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한편, 호주는 1942년 연방정부 소속 Legal Service Bureau를 설립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법률구조 역사가 오래된 곳이며 특히, 각 주정부 소속의 독립적인 법률구조 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 법률구조기구와 연계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

□ 이러한 호주의 주별 특징적인 법률구조 체계를 파악·연구하여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설계 시 이를 반영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법률구조 서비스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 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훈련국 선정 사유

□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률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법률구조 제도를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킴

※ 주요 선진국의 법률구조기관

구분		담당 기관	조직형태	비고
일본		**일본사법지원센터** (이른바 '법테라스')	법무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특수법인과 유사	법률 구조형
미국	민사	**LSC** (법률구조공사)	**비영리 특수법인**	
	형사	**공공변호인제도** (Public Defender)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 고용된 변호사가 형사 국선변호 전담 **각 주별 조직구성 방식** ○ 연방 공공변호인은 사법부 소속 ○ 다수 주에서 사법부·행정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미네소타, 오리건, 몬태나,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국가 전담형
영국		**LAA**[잉글랜드, 웨일즈] (Legal Aid Agency)	법무부 산하의 법률구조 **독립 행정법인**	혼합
		SLAB[스코틀랜드] (Scottish Legal Aid Board))	스코틀랜드 정부 산하의 **독립 위원회**	
캐나다		**법률구조위원회** (The Commission of Legal Aid)	주 정부·변호사회 추천 인원들로 조직된 **독립된 위원회** ※ 주별 조직구성 유형 상이	법률 구조형
호주		**법률구조위원회** (Legal Aid Commission)	각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된 위원회**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특수법인과 유사	

□ 법률구조 전담기구의 형태는 ①독립행정법인형(공단 등), ②위원회형, 성격은 ①법률구조형, ②국가전담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

구분	국가전담형	법률구조형
내용	정부기관을 설치하여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공무원**으로서 고용	공단이나 변호사단체가 주도하여 법률구조를 하되,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
장점	독립된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으로 **중립적·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	**관리·감독 통해** 국민 **편의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등 확보**에 유리
단점	국가기관이 소추와 변호를 모두 담당하여 이해충돌 우려 제기	법무부등 소관부처의 지휘·감독과정에서 변론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

□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된 법률구조 제도의 연계 강화 및 제도 통합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

○ 선진국 법률구조기구의 운영형태(독립법인형, 위원회형), 성격(국가전담형, 법률구조형), 운영방식(전담변호사제, 계약변호사제) 등에 대한 선진국 제도를 분석·학습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통합 모델 발굴 필요

□ 호주는 1942년 연방정부 소속으로 Legal Service Bureau를 설립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법률구조 역사가 오래된 곳임

□ 호주의 Legal Aid는 주정부 소속으로 각각 독립적인 법률구조 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 차이점 비교 등에 적합

□ 호주는 넓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온라인·유선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민간 법률구조기구와 연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호주 국민들은 공공·민간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있음

⇒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민간 법률구조기구가 참여하는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지원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범위 조정을 위해 여러 법률구조기구와 TF 등 논의를 진행 중으로, 호주 훈련을 참고 및 반영 예정

3. 훈련 참여자 및 역할 분담

구분	소속	직급 / 성명	교육참가 필요성	역할 분담
팀장	법무부 인권 구조과	서기관 반준성	· 법률구조 총괄 담당으로서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연계 강화 및 제도 통합의 기반을 설계하고 있음	· 전체 교육 계획 및 운영 총괄 · 법률구조 지원 범위 조정을 위한 법령안 제안 등
팀원		보호 주사보 강도윤	· 국정과제 실무 담당자로서,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의 국정과제 입안 시부터 기획·설계하였고, 훈련 내용을 교육 및 정책반영 가능토록 조력	· 호주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사전조사 및 인터뷰 진행교육 내용을 한국 법률구조기구에 전파
		행정 주사보 강성민	·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로서 호주의 법률구조기구와 국내 법률구조 기구의 비교 분석 임무 수행	· 호주 법률구조 기구와 국내 법률구조기구와의 분석 비교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 연구
		검찰 주사보 하태균	·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담당자로서 호주 법률구조기구와 민간 영역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	· 국가의 법률구조기구와 민간의 법률구조기구 간 구체적인 연계 방식 및 상호 관계 파악

4. 일정('22. 12. 3. ~ 16.)

날짜	교육기관	교육 내용	비고
12.3.(1일차)	한국 → 호주	출국	
12.4.(2일차)		시드니 도착	
12.5.(3일차)	Legal Aid NSW	1일차 : Legal Aid Scope In NSW 2일차 : Relationship between Legal Aid NSW and the private legal profession 3일차 : 훈련 수료 담당 : Mary Whithhead(Manager, strategic project), Jocelyn Flanagan(Director, grant)	
12.6.(4일차)			
12.7.(5일차)			

날짜	교육기관	교육 내용	비고
12.8.(6일차)	Legal Aid Queensland	1일차 : Legal Aid funding 2일차 : Relationship between Legal Aid Queenland and the private legal profession 담당 : Miranda Greer (Communications and Community Legal Education manager))	
12.9.(7일차)			
12.10.(8일차)	브리즈번 → 멜버른		
12.11.(9일차)			
12.12.(10일차)	Legal Aid Victoria	1일차 : Legal Aid Scope in Victoria 2일차 : Relationship between Legal Aid Victoria and the private legal profession 3일차 : Interview(CEO) 4일차 : 훈련 수료 담당 : Cameron Hume(Chief Operating Officer) Rowan Mcrae(Executive Director) ※ 12. 15. 저녁 멜버른 출국	
12.13.(11일차)			
12.14.(12일차)			
12.15.(13일차)			
12.16.(14일차)	한국 → 호주	귀국 및 인천 도착	

5. 호주의 법률구조제도 소개

가. 호주의 법률구조제도 체계

○ 호주의 법률구조 제도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관장하고 있으며 지역법률구조과(Indigenous Justice and Legal Assistance Division)와 지역법률구조센터(Community Legal Centers)로 구성

-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법률구조는 법무부 내 ‘일반 법률서비스 그룹(Civil Justice and Legal Service Group)’의 ’지역법률구조과(Indigenous Justice and Legal Assistance Division)‘에서 담당하여 법률구조 전반에 관한 정책적 사항 및 기금 지원 등을 담당

○ 실질적으로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각 주와 군주마다 독립된 법률구조기관(Legal Aid)과 민간단체 성격의 지역법률구조센터(Community Legal Center)임

○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법률구조'란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대리 및 법률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말함

- 신청인이 법률상담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Granted Legal Aid)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Commission)로부터 자산보유정도에 대한 조사 및 승소가능성 심사를 받아야 함

나. 호주의 법률구조제도 역사[1)]

○ 호주의 법률구조는 헌법상 연방정부의 의무이지만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고, 1903년부터 연방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자기방어권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 법률구조가 재량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1942년에 Legal Sevice Bureau가 설립되어 연방정부의 법률구조 업무를 시행

○ 1973년 Australian Legal Aid Office(ALAO)가 설립되어 연방법 관련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연금생활자, 퇴역군인, 호주 원주민, 이민자 등에 대해 법률상담과 구조를 제공

○ 1977년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간의 합의를 통해 Legal Aid Commission이 기존의 Austrailian Legal Aid Office(ALAO)와 주 정부의 Law Society 등이 행하던 Legal Aid 제도 및 활동을 통합하였음. Legal aid Commission은 1977년부터 1981년 사이에 각 주에서 설립되어 지방변호사회 및 연방변호사회가 법률구조를 제공

- 연방정부는 첫 번째 연방 관련 사안의 법률 서비스에 관하여 Legal Aid Commission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고, 두 번째 연방 법률구조(Commonwealth Legal Aid Commission, CLAC)를 통한 전국적인 법률구조 시스템에 관하여 조언, 조정, 모니터 활동 등을 수행

○ 1981년에 CLAC는 Commomwealth Legal Aid Council로 개편 → 이후 다시 National Legal Aid Advisory Committee(NLAAC)와 Office of Legal Aid Administration(현재 Office of Legal Aid and Family Service(OLAFS)로 개편)의 2개 자문기관으로 재편

- 주로 법률구조 정책에 관해 정부에 조언을 하는 기능을 수행함

1) 조현욱, 「호주의 법률구조제도」, p5~p6

다. 법률구조 대상

○ 형사(Criminal law), 가족법(Family law), 민법(Civil law), 임대차 분쟁, 은퇴자 전용주택 관련 분쟁(Retirement Village Dispute), 가정폭력, 아동복지, 피해자 보상청구권, 난민신청, 사회보장, 재산권 등 분야의 법률문제를 대상으로 함

라. 법률구조 서비스

○ **(무료 법률 지원)** 지역 사회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정보 서비스, 전화 상담, 법원에서의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함

○ **(법률 구조 보조금 지원)** 법률 구조 위원회를 통해 가족법, 형법 및 일부 민법의 영역에 대해 법률 구조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위해서 신청인은 주별로 상이한 개인 자산 및 기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일단 법률 구조가 승인되면 사내 변호사 또는 개인 변호사를 통해 신청인을 지원하며, 만약 상대방도 동일한 Legal Aid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면 개인 변호사에게 법률 구조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청인을 돕도록 하고 있음

○ **(커뮤니티 법률센터)** 호주 전역에는 약 200개의 커뮤니티 법률센터(CLC)가 있어 사설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단, 커뮤니티 법률센터는 Legal Aid와 다른 민간 단체임)

6. 훈련기관 소개

가. 뉴사우스웨일즈주 법률구조기구(Legal Aid New south wales)

<table>
<tr><td>명칭</td><td>Legal Aid
NEW SOUTH WALES</td><td>로고</td><td>Legal Aid NEW SOUTH WALES</td></tr>
<tr><td>소재지
(홈페이지)</td><td colspan="3">323 Castlereagh Street Ground floor, Haymarket NSW 2000, 오스트레일리아
(http://www.legalaid.nsw.gov.au)</td></tr>
<tr><td>조직</td><td colspan="3">· 임원은 의장을 포함한 9명의 비상근 위원과 1명의 상근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뉴사우스웨일즈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됨
· 조직은 크게 형사법, 가족법, 민법과 관련한 법률 구조 부서와 서비스 플랫폼 관리와 기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 부서로 나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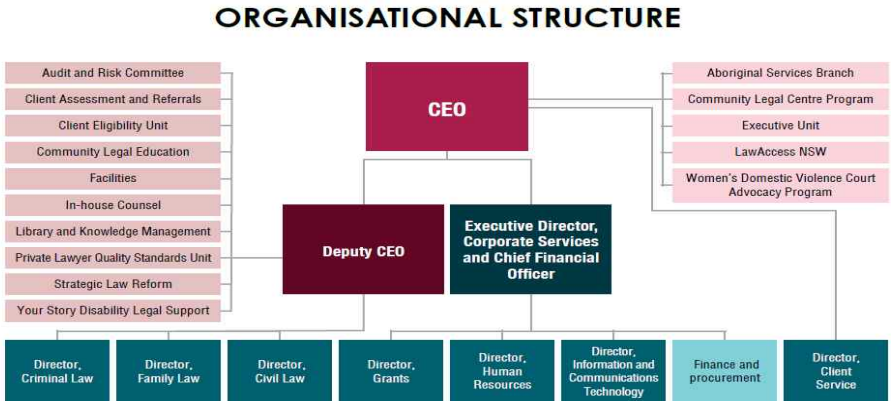

< Legal Aid NEW 조직도></td></tr>
<tr><td>특징</td><td colspan="3">· 1,4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호주 최대 법률구조위원회
· 1979년 법률서비스 위원회로 설립 → 1987년 Legal Aid Commission으로 개편 → 2006년 Legal Aid NSW로 변경</td></tr>
<tr><td>주요업무</td><td colspan="3">· Legal Aid NSW의 주요 역할은 민·형사, 가족법 등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 및 Legal Aid NSW로부터 기금을 받는 개인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임
· 또한, 커뮤니티 법률센터, 호주 원주민 법률서비스 및 무료 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29가지 법정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32개 지역 법률센터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td></tr>
</table>

나. 퀸즈랜드주 법률구조기구(Legal Aid Queensland)

명칭	Legal Aid Queensland	로고	Legal Aid QUEENSLAND
소재지 (홈페이지)	44 Herschel St, Brisbane City QLD 400, 오스트레일리아 (http://www.legalaid.qld.gov.au)		
조직	· 이사회 구성원은 CEO가 3년 임기로 임명함 ·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별(공공변호사, 형법, 가족법)로 조직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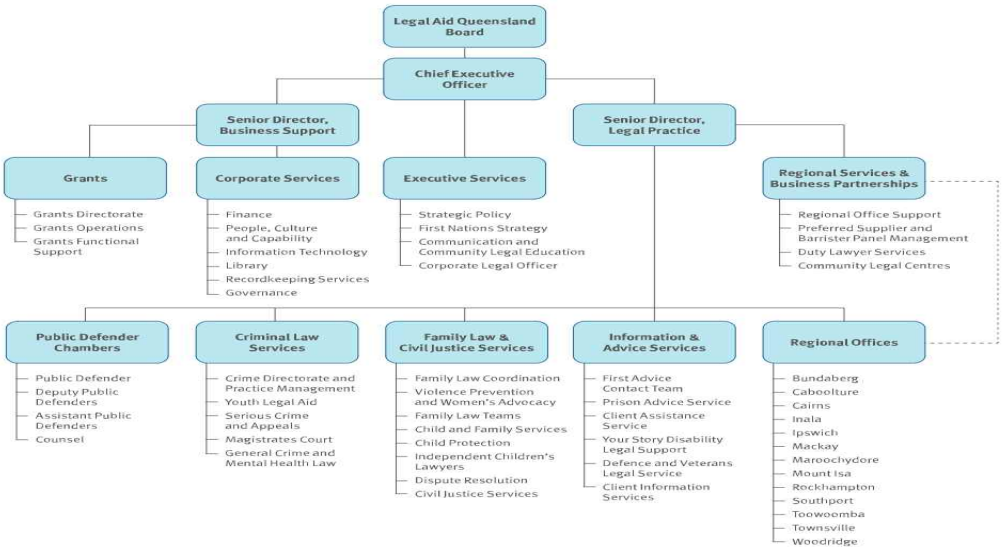 < Legal Aid Queensland 조직도>		
특징	· 1979년 Legal Aid Office(Queensland)로 설립 → 1991년 Legal Aid Office(Queensland)와 Public Defender's Officer가 합병 → 1997년 Legal Aid Queensland가 설립되어 Legal Aid Office를 대체		
주요업무	· 분쟁 예방 및 소송전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및 간행물을 통한 정보제공, 지역사회 법률교육 · 민·형사법, 가족법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다. 빅토리아주 법률구조기구(Victoria Legal Aid)

명칭	Victoria Legal Aid	로고	Victoria Legal Aid
소재지 (홈페이지)	570 Bourke St, Melbourne VIC 3000, 오스트레일리아 (http://www.legalaid.vic.gov.au)		
조직	· 이사회는 의장 1명과 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는 빅토리아 주 법무장관이 지명하고 시의회 의장이 임명 · 최소 1명씩의 재무 관리 경험자, 공공 관리 경험자, 형사소송 수행 경험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법률 종사자 또는 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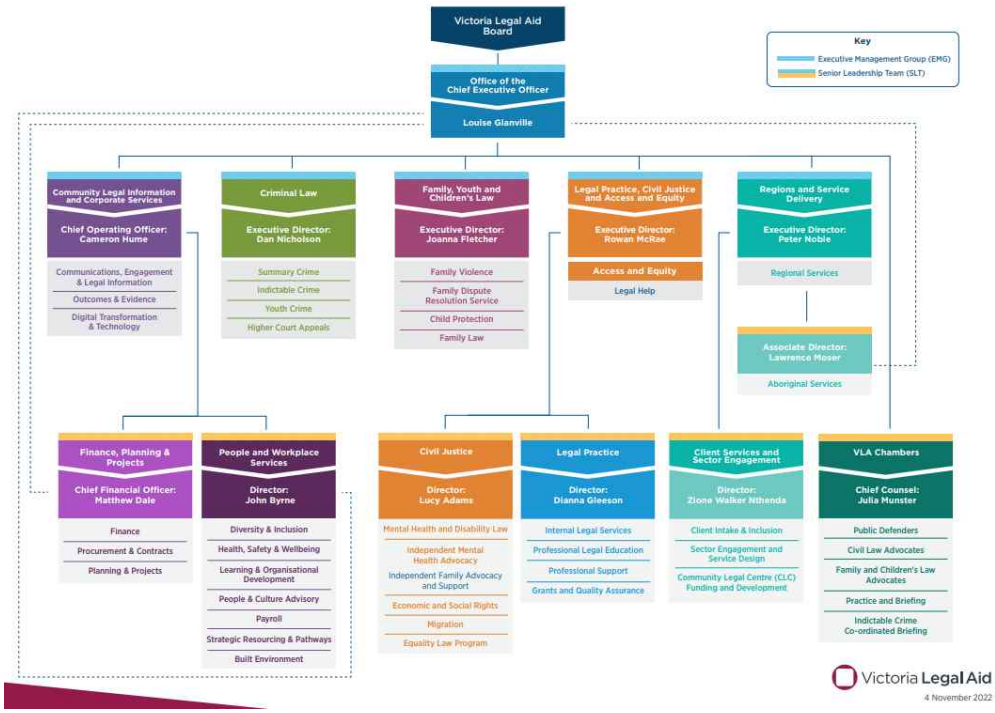 < Victoria Legal Aid 조직도>		
특징	· 1978년 Legal Aid Commission of Victoria 설립 → 1995년 Vitoria Legal Aid로 변경		
주요업무	· 가족의 붕괴, 아동 보호, 가정 폭력, 범죄, 사회 보장, 차별, 이민, 임대 및 부채와 같은 법률적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어린이, 노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Ⅲ 훈련내용 및 논의사항

1. 뉴사우스웨일즈주 법률구조기구 Legal Aid NEW SOUTH WALES

□ Legal Aid NSW 연혁

○ 뉴사우스웨일즈주의 Legal Aid Commission Act(1979)에 근거하여 1979년 법률 서비스 위원회로 설립되어 1987년 Legal Aid Commission으로 개편된 후 다시 2006년에 Legal Aid NSW로 이름이 변경됨

Legal Aid Commission Act 1979 No 78

New South Wales

Status information

Currency of version
Current version for 27 July 2020 to date (accessed 2 December 2022 at 12:02)
Legislation on this site is usually updated within 3 working days after a change to the legislation.

Provisions in force
The provisions displayed in this version of the legislation have all commenced. See Historical Notes

Formerly known as
Legal Services Commission Act 1979

Editorial note
The Parliamentary Counsel's Office is progressively updating certain formatting styles in versions of NSW in force legislation published from 29 July 2019. For example, colons are being replaced by em-rules (em-dashes). Text of the legislation is not affected.

□ 기관 운영 등 사항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법률구조기구는 1,4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호주에서 가장 큰 법률구조기구(호주 전역에 8개 주마다 Legal Aid 설립·운영)

○ Legal Aid NSW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으나 기관의 의사결정은 자체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음

○ 2021-2022년의 예산은 $438.9M / 지출은 $426.0M(이하 AUD)

Source of funding

- State appropriation including National Legal Assistance Partnership $340.7M
- Public Purpose Fund $21.0M
- Other grants $56.5M
- Crown Entity $4.2M
- Other $16.5M

Expenditure

- Employee related $161.0M
- External legal services $146.0M
- Grants and subsidies $77.3M
- Other $41.7M

Legal Aid NSW의 예산 및 지출 구성

○ Legal Aid NSW는 호주에서 가장 큰 법률구조기구로 총 1,4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변호사가 730명임

-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총 25개 기관(지부)이 있고 그 중 본부는 호주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에 있음

※ 한국 전체를 관할로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직원이 820명이고, 그중 변호사는 154명

Legal Aid NSW 기관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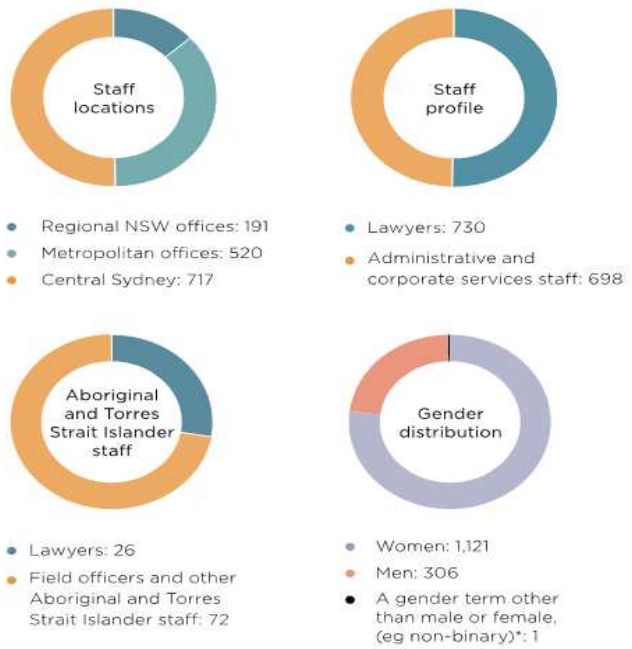

Legal Aid NSW 인력 구성

□ 법률구조제도 운영

○ Legal Aid NSW의 주요 역할은 민·형사, 가족법 등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하고, Legal Aid NSW로부터 기금을 받는 개인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임

○ 또한, 커뮤니티 법률센터, 호주 원주민 법률서비스 및 무료 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29가지 법정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32개 지역 법률센터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업무는 자체 변호사(In-house)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와 민간 변호사(Private lawyer)에게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수행하는 경우로 나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통해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여 계약하지 않음)

- 법률대리서비스의 경우 민간변호사가 자체변호사에 비해 약 2.5배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국선변호 등과 같은 의무적 변호 서비스의 경우 고용변호사가 사선변호사에 비해 1.4배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업무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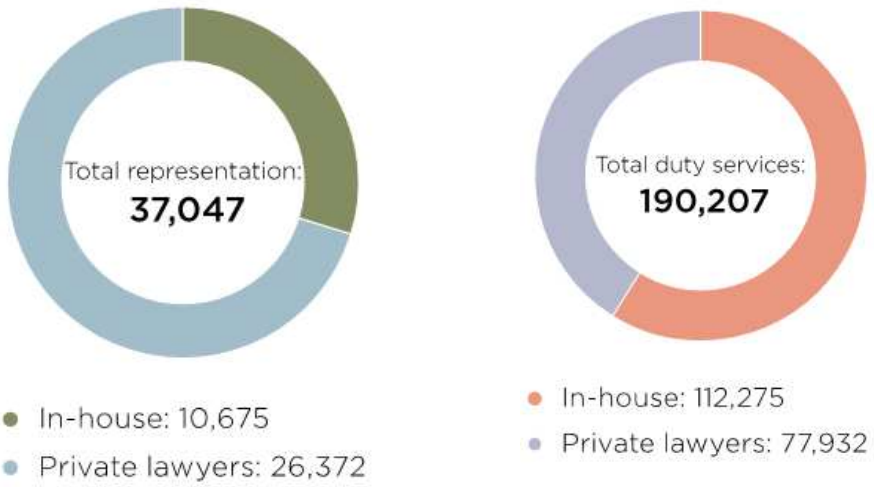

- 주로 1회성 성격의 업무에 민간 변호사를 많이 활용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지원이 필요한 업무에는 고용변호사를 활용한다고 함

○ Legal Aid NSW의 특징으로는 지원 대상자 중 원주민(Aborigin)의 비율이 21.3%로 높음(Victoria Legal Aid의 경우 약 7%)

- 원주민에게 법률구조 요건을 완화한 것은 아니며 원주민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사회적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임

○ 법률상담은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 절차 및 양식안내 등 단순 정보제공(Information services)의 경우 일반직원을 통해 수행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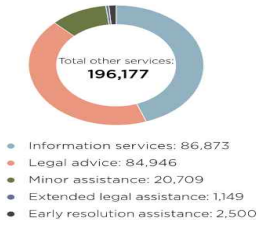

○ 희망자가 법률지원을 받으려면 요건심사를 통과해야함

- 요건 심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됨

Policy for each area of law	적용 법률을 판단하는 것으로 형법, 가족법, 민법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함(상법 등은 지원 불가)
merit test	희망자를 구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승소가능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means test	소득, 자산 등이 일정 기준에 충족해야함

○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로는 직접 신청, 자체변호사를 통한 신청, 민간변호사에 의한 신청의 3가지 경우가 있음

- 온라인 사이트가 있으며,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물론 민간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업무포탈을 통해 신청 후 Legal Aid NSW로부터 요건 심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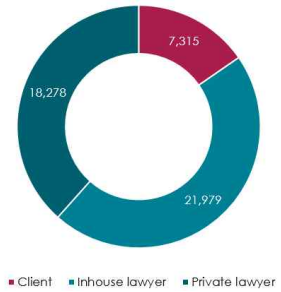

직접신청/고용변호사를 통한 신청 /민간변호사를 통한 신청 비율

□ 법률구조제도 주요 절차

○ **(성격)**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1회성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

○ **(검토 내용)**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또는 신청인을 대리할 변호사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인 지원 여부를 검토

○ **(상담 시간)** 일반적으로 상담은 15분~20분간 제공되며, 법률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해결방안 등에 대한 상담 수행

○ **(법률자문 대상)**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 무료 상담을 제공

□ 주요 법률구조 내용

○ **(형사법 분야)** 형사 고발 대상자가 '출석통지서' 등 구체적인 형사절차와 관련된 문서를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률자문을 제공

- **(아동법률서비스)** Legal Aid NSW의 아동 법률 서비스(Children's Legal Service)는 아동을 위한 형사 사건 및 소년 법원과 관련된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리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Legal Aid NSW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언하고 대리하는 민간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

- **(마약사건)** Legal Aid NSW는 마약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모든 피고인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단,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며 12개월간 치료 또는 재활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며 폭력, 성폭력 또는 심각한 수준의 마약 범죄로 기소된 경우는 지원불가함)

- **(수감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Legal Aid NSW는 수감자를 위한 보석, 항소, 법률 지원, 가석방 분류 및 수감자와 관련한 가족법, 민법(벌금, 부채, 주택) 분야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출소 후의 재활을 지원하는 무료 PLS(Prisoners Legal Service) 서비스를 제공

- **(청소년을 위한 핫라인, Legal Aid Youth Hotline)** 18세 미만 청소년이 법률 자문을 받은 후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대신 경찰에 신고 후 현장에서 '경고'를 받거나 경찰 '청소년 사법 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함(더 심각한 범죄의 경우 '주의' 처분을 받게 됨)

○ **(가족법 분야)** 이혼 등 가정 해체로 인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녀양육 등 문제 등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

- **(주요 분야)** 자녀양육비, 아동전문변호사, 가정폭력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고 아동을 위해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양육이 달성되도록 도움

- **(대상)** 부모, 자녀, 청소년 및 가족 구성원 등 어린이나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과 변호 서비스를 제공

- **(아동 지원 서비스)** Legal Aid NSW의 전문 분야로 복지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친자 관계 증명, 양육비와 관련된 결정 등과 관련되어 상담 및 지원을 제공

- **(가족분쟁해결)** 가족분쟁해결서비스(Family Dispute Resolution Service)를

통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 **(아동 변호사)** Legal Aid NSW는 아동을 위한 전문 법률대리인을 제공함

※ 독립적인 아동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중 한명의 신청 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서 임명함

· 아동 학대 또는 방임 혐의가 있는 경우
· 부모간 심한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 자녀들이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
· 가정 폭력 혐의가 있는 경우
· 부모 또는 자녀 중 심각한 정신 질환 문제가 있는 경우

○ **(민사법 분야)** 신용, 부채 및 대출 문제를 포함한 소비자법, 이민, 자연재해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

- 법률자문은 무료이며,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하여 법률 구조 보조금 신청이나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다만, 소송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 자산 및 법적 문제 유형에 따라 분담금을 지불해야 함

- **(원주민을 위한 서비스)** 호주 원주민을 위한 경제적 문제(대출, 부채, 벌금, 장례 보험 및 사기 등), 주택 문제(주택 수리, 임대료 연체, 강제퇴거 등), 경찰에 대한 불만 등에 관하여 상담을 제공

※ Aboriginal Legal Service, Local Aboriginal Land Councils, Community Legal Centers 등과 협력

- **(사망 사건)** 구금 중 사망, 정신병원 입원 중 사망, 공공의 안전과 관련한 사망 등의 경우에 뉴사우스웨일즈의 검시관이 사망 원인에 대하여 조사 후 결과를 제공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기관 등에 해결책을 제시함

- **(경제적 문제)** 미납 벌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등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

-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등을 위해 고용법과 관련된 무료 법률 자문 및 대리를 제공함

- **(노숙자)** 노숙자를 위한 벌금, 차별문제, 주택, 사회보장, 정부기관에 대한 불만사항, 피해자 보상 및 부채와 같이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 제공

- **(이민자)** 호주 거주 비자, 이민자 신분, 호주 시민권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난민 및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그룹 및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

- **(정신적 건강 문제)**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MHAS)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 및 그 가족, 친구, 정신건강법과 관련된 무료 법률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함.
- **(모기지론 문제)** Mortgage Hardship Service는 주택 담보 대출금 상환 또는 다른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 실행자로부터 퇴거 또는 압류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법원 소송 절차를 앞둔 경우 법률적 지원을 제공함
- **(노인 학대)** 65세 이상(원주민은 50세 이상)이며 노인 학대를 경험하고 있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해 주택, 대출, 후견인, 신체적·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심리적 학대(괴롭힘, 방임) 문제와 관련한 법적 지원 제공
- **(난민 문제)** 최근 6년내 호주로 온 난민이 뉴사우스웨일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 주택, 벌금, 차별, 자동차 사고, 가정폭력 등 문제에 관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

  ※ 다만, 법률구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인의 자산 및 법원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먼저 심사해야 함

○ **(가정 폭력 분야)** 가정폭력을 경험한 성인과 아동에 대하여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가정폭력 금지 명령 신청, 자녀, 이혼 및 재산 분할, 모기지, 신용 및 부채, 주택 문제와 같은 재정 문제에 대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

□ 법률구조기구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

○ **National Legal Aid**

- National Legal Aid는 정부기관은 아니고, 호주 전역에 있는 8개의 Legal Aid를 대표하는 기구로 직접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규정 개정 등에 관한 논의나 법률구조기구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시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업무 수행
- National Legal Aid는 현안에 따라 1년에 3~4회 정도 회의를 진행하는데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통상적 업무는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연방정부는 National Legal Aid를 통해 각 주에 있는 법률구조기구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National Legal Aid는 연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함

○ **민간 사선변호사와의 업무 계약 및 배당**

- 고용변호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선변호사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사선변호사는 법률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 보장을 위해 Legal Aid NSW와 협업 시 Legal Aid NSW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민간단체와의 협력

- **커뮤니터 법률센터(Community Legal Center, CLC)**
  - · Legal Aid NSW는 연방 정부, NSW정부 및 NSW의 커뮤니티 법률센터* 프로그램(CLCP)을 위한 공공 기금을 대신해 자금을 관리함
  - · 이 프로그램은 32개의 일반 및 전문 CLC와 해당 부문의 최고 기관인 Community Legal Center NSW에 자금을 지원함
  - · CLC 프로그램은 ALAP(Aboriginal Legal Access Program), CCAS(Children's Court Assistance Scheme) 및 CSS(Court Support Scheme)을 포함하여 비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

  ※ 법률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독립적인 민간 비영리 단체

- **법률 서비스 협력 프로그램(Cooperative Legal Service Delivery Program, CLSD)**
  - · CLSD 프로그램 파트너십은 Legal Aid NSW, 커뮤니티 법률센터, Aboriginal Legal Service NSW/ACT, 가정 폭력 예방 법률 서비스, 지역 법원, 여성을 위한 가정 폭력 보호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는 법률 또는 비법률적 서비스 연합임

- **교외지역 법률지원 프로그램(Regional Outreach Clinic Program)**
  - ·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NSW 지역의 교외 및 외진 지역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 **여성 폭력 법정 변호 프로그램(WDVCAP)**
  - · 주 전역의 27개 네트워크를 통해 뉴사우스웨일즈 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임
  - · WDVCAP은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과 자녀의 법적, 사회적 필요를 대리하며 법원에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을 요청하여 효과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주요 논의 사항 요약

Q.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안정적인지

A.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에서 더 많은 비중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음. 집권 당에 따라 지원 예산의 증감은 있으나, 주요 사업 방향이 변동되는 정도의 차이는 없음

Q. 주 정부의 변동에 따라 지원금이 변하면 규정을 수정하여 지원대상을 조정하는 등 조치가 있는지

A. 관련규정을 변경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조정하나, 지원대상의 현격한 변동이 있지는 않음

Q. 각 주별로 지원대상 ·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동일하게 조정해야한다는 요구는 없는지

A. 지역별로 지원대상이 다른 것은 주별로 법률, 환경 등 상황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합리적인 차이임. 또한 주정부의 재정, 예산 등의 차이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법률구조 대상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Q.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던 중 주거지를 옮기는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주에 있는 Legal Aid와의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한 NSW 주민이 빅토리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A. 기본원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소송을 끝까지 처리해야 하고, 주별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거지 이동에 따른 재판 관할 이동이 발생할 경우는 없음. 다만 가정법과 같은 경우는 연방법이기 때문에 관할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해당 주의 법률구조기구를 통해서 처음부터 절차를 시작해야함

Q. 한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상담을 준비중인데, NSW에서는 이와 유사한 진행 중인 제도가 있는지

A. 호주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어 영어에 취약한 계층도 많으므로 AI를 통한 상담에 많은 제한이 있음. 다만 법률구조 요건이 되는지 요건 심사 정도는 AI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임

2. 퀸즈랜드주 법률구조기구

□ Legal Aid Queensland 연혁

○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법률 대리 및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79년 12월 Legal Aid Office(Queensland)를 설립

○ 1991년에 주정부 계획에 따라 Legal Aid Office(Queensland)가 Public Defender's Office와 합병되었고, 새로 확장된 Legal Aid Office는 고객들에게 가족법, 민사, 형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 1997년 Legal Aid Queensland는 Legal Aid Queensland Act(1997)에 따라 설립되었고, Legal Aid Commission이 운영하던 이전의 Legal Aid Office(Queensland)를 대체하게 됨

□ 기관 운영 등 사항

○ Legal Aid QLD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으나, 기관의 의사결정은 자체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에 대한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의무가 없음*

* 다만, 예산 사용 등에 대한 감독은 받음

○ 2021-2022년의 예산은 $163.4M / 지출은 $163.9M

- 재원의 대부분은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지원받으며 지출의 대부분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 및 사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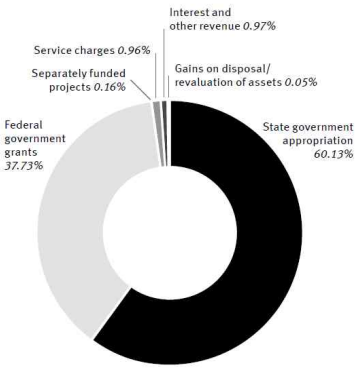

Legal Aid QLD의 예산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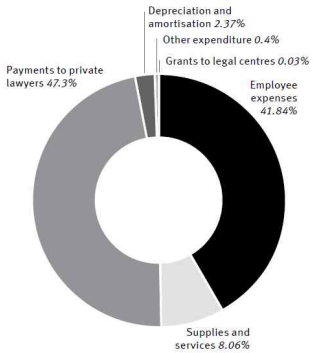

Legal Aid QLD의 지출 구성 비율

- 연방정부에서 받은 예산은 주로 연방법과 관련된 가정법, 소정의 형사법, 소정의 민사법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쓰이고 주정부에서 받은 예산은 주 법률에 의한 형사사건, 아동폭력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사용됨

○ 퀸즈랜드 전역에 14개 지부와 620명의 직원이 있고, 인적 구성의 특징으로는 임원의 60%, 일반직원의 77%가 여성으로 구성

□ 법률구조제도 운영

○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소송보다는 예방과 조기 개입 또는 분쟁해결 서비스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

- 2021~2022년 동안 콜센터를 통한 상담이 135,515건이었는데, 그 중 86,696건이 법적분쟁에 가지 않았음

- 법률교육은 사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Legal Aid Qld에서는 지역 법률교육커뮤니티(CLE)를 통해 퀸즈랜드 전역의 지역 행사(민족행사)에 참여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퀸즈랜드 법률지원 포럼(QLAF)을 개최하는 등 업무 수행

○ 홈페이지에 법률에 관한 정보 게재, 간행물 및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구조 희망자의 법률정보 및 Legal Aid QLD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작성한 홍보자료

□ 법률구조제도 지원분야

○ **(COVID-19)** COVID-19와 관련된 가정폭력, 소비자 또는 금융 부채, 근로계약법, COVID-19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

○ **(형법)** 치안판사, 지방법원 또는 대법원의 형사 고발, 정신건강법원·항소법원, 아동법원과 관련된 문제, 교통 및 운전과 관련된 위반 사건

· 지방법원 및 대법원에서의 형사 절차
· 형사 항소
· 정신 건강과 관련한 법원 절차– 최대 형량이 징역 14년을 초과하는 죄명에 대한 법정 절차
· 보호관찰 위반, 지역사회 봉사 및 지방법원 등에서의 집행유예
· 보석

○ **(가족법)** 양육권, 이혼 및 재산분할, 가정폭력, 아동보호, 가정 분쟁조정 분야

·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 선임된 아동
·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아동의 안전이나 복지가 위험에 처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민법)**

- 인종, 연령, 성별로 인한 차별로 인한 법적 문제
- 근로계약법과 관련한 근로자의 법률자문 및 대리
- 농장 및 농촌 지역 법률서비스(심각한 부채, 대출 기관과의 분쟁,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농촌 지역 생산자를 도움)
- 재향군인 보상·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문제
- 소비자 사기 및 대출 상환, 주택 압류 문제

※ 지원불가 : 상거래 또는 부동산 문제, 관세 및 연금, 근로자 보상 문제, 환경법 등

○ **농촌지역 법률 서비스**(Farm and Rural Legal Service)

□ 법률구조기구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

○ 퀸즈랜드 지역 법률구조 환경·여건

- 퀸즈랜드 지역은 한국과 비교하여 행정구역의 규모는 매우 넓지만(대한민국의 약 17배) 인구는 적은 특성(약 500만명)을 지님

- 이로 인해 Legal Aid QLD에서 모든 구역에 법률구조기구 사무소를 직접 설치하여 공백없이 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려움

- 따라서 행정구역 면적에 비해 적은 수의 사무소를 두게 되므로 일부 지역 주민은 Legal Aid QLD 사무소를 통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매우 먼 거리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가능함

○ 민간과의 협력 중요성

- 이와 같이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적어 지부 등을 촘촘히 두기 어려운 여건에 따라 300여개의 민간 로펌과 협력하여 법률지원을 실시하는 등 민간기구와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

- 민간로펌(300여개), 지역커뮤니티센터(CLCQ), 원주민 또는 가정폭력전문 상담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 중

- Legal Aid QLD의 지부는 14개에 불과하지만 지역커뮤니티센터 등 협력 기구를 활용하여 42개의 Access Point(일종의 상담창구)를 설치·운영 중임

○ 민간 사선변호사 활용 현황

- Legal Aid QLD 또한 Legal Aid NSW와 마찬가지로 고용변호사(In_House)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민간 사선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2021~2022년 지출 중 47.3%가 사선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자체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사건 처리비율은 2:8정도임

- Legal Aid QLD와 협력하기 희망하는 민간로펌은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률지원 시 Legal Aid QLD에서 지급하는 비용 외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접수 받은 사건을 민간로펌에 배당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뉨

  · **(Legal Aid QLD에서 직접 접수)** 소송 상대방에 대한 지원을 Legal Aid QLD에서 수행 중인 경우, Legal Aid QLD와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난이도·전문성 고려 시 민간로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민간로펌에게 배당

· **(민간로펌에서 접수 후 신청)** 사선변호사가 지원 희망자의 소득요건 등 정보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며 Legal Aid QLD에서 요건을 심사하고 통과 시 민간로펌에게 배당

○ **지역 커뮤니티센터(CLCQ) 활용 및 예산지원**

- 특히 인구밀도가 낮고, 민간 로펌도 설치되지 않은 곳들에 대하여는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법률지원을 실시
- 지역 커뮤니티센터는 지역 내 소외지역 등의 주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의 형태로 자발적 설치(우리나라 비영리 법인 등과 유사)
- 지역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제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Legal Aid QLD에서 직접 지원금을 지급

※ 지원금 규모가 적다는 불만 등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

Community legal centre	Federal government funding $	State government funding $	Total recurrent funding $
Aged and Disability Advocacy Australia Ltd	228 835	163 053	391 888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Women's Legal Services NQ Inc.	388 026	276 484	664 510
Basic Rights Queensland Inc.	603 988	430 366	1 034 354
Bayside Community Legal Service Inc.	85 405	60 855	146 260
Brisbane North Community Legal Service	171 094	121 911	293 005
Cairns Community Legal Centre Inc.	486 272	346 488	832 760
Caxton Legal Centre Inc.	1 417 716	1 010 181	2 427 897
Central Qld Community Legal Centre Inc.	632 865	450 942	1 083 807
Community Legal Centres Queensland	481 601	30 000	511 601
Court Network Inc.	150 000	–	150 000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Ltd	391 265	–	391 265
Gold Coast Community Legal Centre & Advice Bureau Inc.	734 214	523 157	1 257 371
HUB Community Legal	616 820	439 509	1 056 329
LawRight	1 150 748	819 956	1 970 704
LGBTI Legal Service Inc.	253 714	–	253 714
Mackay Regional Community Legal Centre Inc.	273 603	194 953	468 556
North Queensland Women's Legal Service Inc.	793 804	565 617	1 359 421
Pine Rivers Community Legal Service	507 425	361 561	868 986
Prisoners Legal Service Inc.	324 217	231 017	555 234
Queensland Advocacy for Inclusion	384 443	273 932	658 375
Refugee & Immigration Legal Service Inc.	575 567	410 114	985 681
Suncoast Community Legal Service Inc.	297 085	211 685	508 770
TASC National Ltd	1 216 643	866 907	2 083 550
Tenants Queensland Inc.	207 426	147 800	355 226
Townsville Community Law	320 602	228 442	549 044
Wide Bay Burnett Community Legal Service	295 537	211 231	506 768
Women's Legal Service Queensland Inc.	1 145 770	816 408	1 962 178
Youth Advocacy Centre Inc.	274 887	195 869	470 756
YFS Legal	388 110	276 544	664 654
Total	**14 797 682**	**9 664 982**	**24 462 664**

CLCQ에 대한 지원금(연방정부, 주정부) 현황

○ **민간 로펌, 지역 커뮤니티센터에 의한 법률지원 품질 보장을 위한 조치**

- 연 3회정도 수행업무에 대한 칭찬사항, 불만사항 등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로펌의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 로펌과 계약을 파기하고 협력기관 목록에서 제명하는 등 조치를 취함
- 자체 직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로펌 사선변호사, 협력 민간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함

◈ 주요 논의 사항 요약

Q. 한국에서는 AI를 활용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Legal Aid QLD도 원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접근 편의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준비 중인 사항이 있는지

A. 현재까지 AI를 통한 법률상담 제공에 관한 검토는 없었음. 한국의 경우 매우 선제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인상적임.
다만, 웹챗을 활용한 상담은 제공하고 있고, 이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상담 직원이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법률정보 및 답변을 제공하는 것임.
답변의 경우 미리 작성된 Q&A 풀에서 적절한 답변을 상담원이 골라서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원 대상자가 비밀보장 등의 사유로 웹챗을 통한 상담을 희망할 경우 CIO(Client Informaion Officer)가 법률정보 및 절차제공 등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전문적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변호사에게 연계해줌

Q. 민간로펌의 경우 Legal Aid QLD와 협력 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는데 업무 수행에 적극적인지?

A. 아주 적극적이라고 말할 순 없으나, 로펌의 사정에 따라 Legal Aid QLD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법률구소 업무 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두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펌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음

3. 빅토리아주 법률구조기구 Victoria Legal Aid

□ Victoria Legal Aid 연혁

○ 빅토리아주의 법률구조 위원회(Legal Aid Commission of Victoria)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1978년에 설립되었고 1981년에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하였음

○ 1990년대 포트 아서 총격* 사건을 계기로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졌고 1995년에는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Commission of Victoria)가 Vitoria Legal Aid로 변경되었음

* 호주 테즈메니아주 사적지인 포트 아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Authorised Version No. 072

Legal Aid Act 1978

No. 9245 of 1978

Authorised Version incorporating amendments as at 12 April 2019

TABLE OF PROVISIONS

Section		*Page*
1	Short title and commencement	1
Part I—Preliminary		**2**
2	Definitions	2
Part II—Victoria Legal Aid		**12**
3	Establishment	12
4	Objectives	13
5	VLA not to represent the Crown	13
6	Functions and powers	13
7	Duties of VLA	16
8	Arrangements and guidelines for allocation of legal aid work	20
9	Guidelines for provision of legal aid	21
10	Delegation	21
11	Board of directors	22
12	Role of board	23
12B	Appointment of directors	24
12C	Terms and conditions of appointment of directors	25
12D	Vacancies, resignations, removal of directors from office	26
12E	Acting chairperson	27
12G	Validity of decisions of board	28
12H	Proceedings of board	29
12I	Resolutions without meetings	30
12J	Disclosure of interests	30
12JA	Role of chief executive officer	31
12JB	Appointment of chief executive officer	31
12JC	Terms and conditions of appointment of chief executive officer	32
12JD	Vacancy, resignation, removal from chief executive officer's office	32
12JE	Acting chief executive officer	33
12JF	Validity of decisions of chief executive officer	34
12K	Community consultative committee	34

□ 기관 운영 등 사항

○ Victoria Legal Aid에는 15개의 지부에서 총 99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남성은 245명이고 여성은 746명임

○ 2021-2022년의 예산은 $276.1M / 지출은 $247.9M

- 이중 연방정부는 $54.7M를 주정부는 $146.5M을 지원하였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함

□ 법률구조제도 운영

○ Victoria Legal Aid(VLA)에서는 웹챗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활발함

※ 웹챗과 전화를 통해 처리하는 상담건수는 연간 약 12만건

- 웹챗을 통한 상담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법적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큼

- 또한 전화상담에 비해 대기시간이 짧고 응답이 빠르므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실제로 VLA의 전화상담 응답률은 50%인데 반해 웹챗의 응답률은 95%로 월등히 높음, 통계적 근거가 있는 것을 아니지만 담당자는 경험적 판단했을 때 전화상담 1건을 처리할 시간에 웹챗을 5건 처리할 수 있다고 함

- 다만, 일반직원이 웹챗을 통해 상담하는 경우 법률상담은 제공하지 못하고 정보 제공 및 절차 안내(Informaion Service)를 제공함

- 시범적으로 가정법 일부를 변호사를 통해 웹챗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은 경우 확대 시행할 예정임

-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챗 서비스에 대한 검토도 있었으나 실제로 도입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Victoria Legal Aid는 상담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상담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하고 있음

- 과거에는 상담사가 상담자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6개의 창을 띄워놓고 업무를 진행해야 했지만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현재는 1개의 창만으로도 정보 입력이 가능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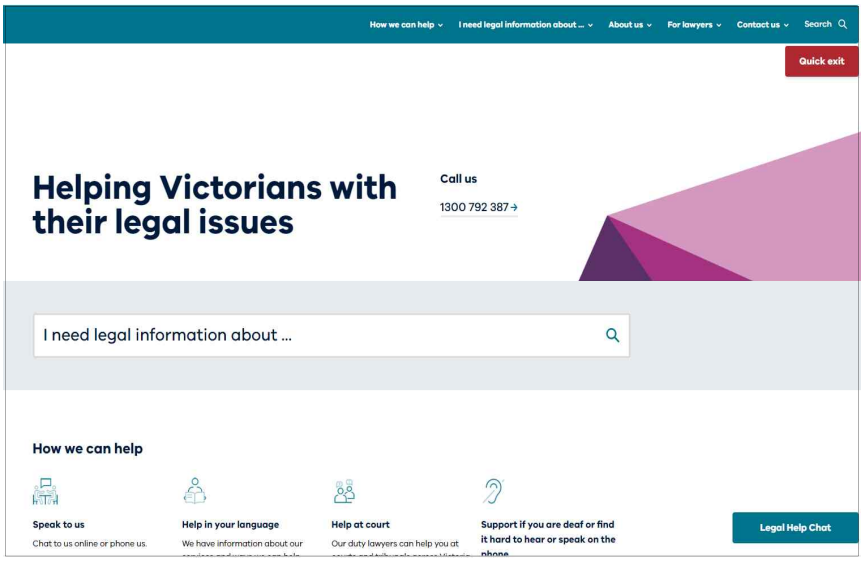

홈페이지 하단에 웹챗에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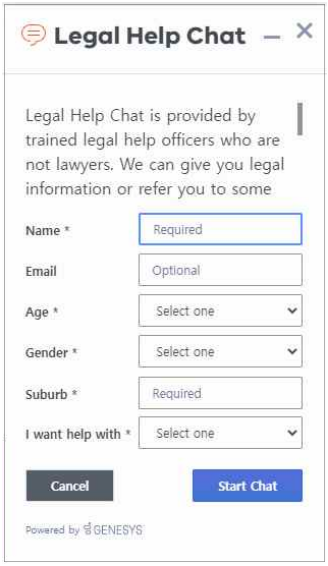

접속 시 기본정보 입력화면

○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정보 제공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홈페이지도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음

○ Victoria Legal Aid가 웹첫,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등 IT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이유는 늘어나는 법률구조 수요를 한정된 예산으로 충족하기 위한 측면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

※ 아래의 피라미드에 따르면 자격(요건)에 따른 법률구조 서비스로 사전 예방 서비스만으로도 많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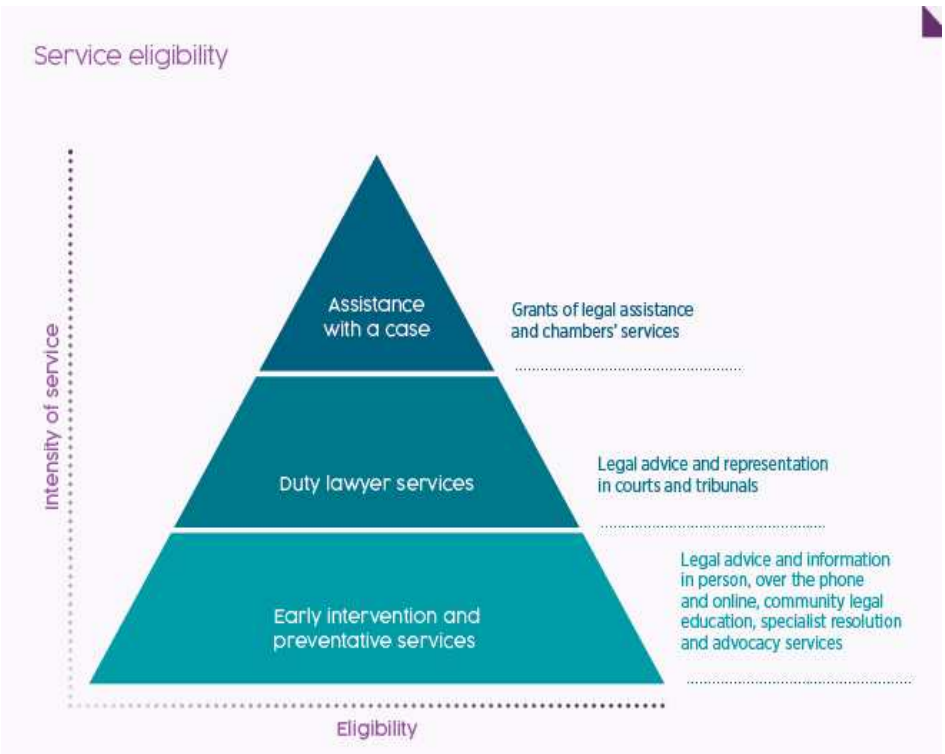

○ Victoria Legal Aid는 법률구조 사건을 자체변호사, 민간변호사, 지역커뮤니티센터 등에 배당하는 업무를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인식

- 법률구조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자체변호사(In-house)에 의한 처리, 민간변호사에 의한 처리, 지역커뮤니티센터에 의한 처리, Pro Bono* 변호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음

  *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공익봉사활동

- 다른 Legal Aid들과 마찬가지로 민간변호사들이 Victoria Legal Aid와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며 자체변호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자체변호사, 민간변호사 업무처리 비율은 2:8정도 되나 민사법 분야의 경우 자체변호사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변호사 활용비율이 5%정도 된다고 함

- Victoria Legal Aid와 협력하는 지역법률커뮤니티는 51개인데 Victoria Legal Aid를 통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음

  ※ 지원급 지급과는 별개로 자체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없음

- 지역 법률커뮤니티에 법률구조업무를 배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법, 상법과 같이 Victoria Legal Aid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분야를 배당하고, 배당 시 일종의 추천서와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줌

  ※ 연계받는 기관이 고객에게 같은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기존에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 Victoria Legal Aid를 통한 지원, 지역법률커뮤니티를 통한 지원 모두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Pro Bono 변호로 처리하나, Pro Bono의 경우 간단한 법률상담으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음

○ 법률구조업무 배당은 자동화되어 있는데 고객 또는 변호사가 Victoria Legal Aid에서 구축한 플랫폼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판단하여 배당

- 통상 50%정도는 자동으로 배당되며, 그 외 50%는 사람이 추가로 검토 후 배당함(사람의 검토 필요성 여부도 자동으로 분류됨)

- 효율성과 위험성 간 균형을 위해 임의표본 추출로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법률구조제도 지원분야

○ **(민사)** 민법 및 행정법 업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 사회보장, 정신건강, 후견 및 관리, 이민, 임대차, 부채, 성희롱 및 범죄 피해자와 같은 문제를 다룸

○ **(형사)** 법률 지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형사 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사람들을 위해 고품질의 법률 자문과 변호를 제공함. 또한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가족법)** 가족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가 개입하기 전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실행가능하며 어린이 중심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변호 제공)** 민사, 형사, 가족, 청소년 및 아동법 문제에서 법률 지원을 받는 고객에게 고품질의 변호를 제공함. 또한 전략적 소송을 수행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인 고객과 더 넓은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조율함

○ **(정신 건강을 위한 조력)** 강제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정보, 지원 및 변호를 통해 치료 및 회복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 Victoria Legal Aid의 주요협력 기구

○ National Legal Aid

- National Legal Aid의 회원으로서 다른 주의 법률구조위원회와 협력하여 호주 전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법률 구조가 제공되도록 함

○ 법률지원 포럼

- 법률지원 포럼을 통해 다른 법률 부문 조직과 협력하여 빅토리아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킴

※ Victorian Legal Forum, Austrailian Legal Access Forum, Gippsland Legal Assistance Forum 등

○ 민간 변호사

- 민간 법률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양질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커뮤니티 법률 센터

- 커뮤니티 법률센터는 지역사회에 무료 조언, 사례 관리 및 법률 교육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지역사회 조직임. 빅토리아 전역에 51개의 커뮤니터 법률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부채 문제, 가족법, 범죄피해자 보상, 이웃간

분쟁 등 문제를 해결하며 일부는 임대차, 소비자, 고용관계, 인권, 환경 및 이민법과 같은 특수한 영역을 전문 분야로 하기도 함

○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법률 서비스**

-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주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법률 지원과 지역 사회 법률 교육을 제공함

○ **빅토리아 원주민 법률 서비스**

- 1970년대 원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원주민이 법적 권리를 누리고 법정에서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빅토리아 원주민 가정폭력 예방 및 법률 서비스**

-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폭력의 영향을 받는 가족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2002년도에 설립됨

◈ 주요 논의 사항 요약

Q. 법률구조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능한 자체변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능한 변호사를 확보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A. Victoria Legal Aid의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기여하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 따라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일하고 있음

Q. Victoria Legal Aid의 경우 장애인들과 원주민 등의 요건을 완화해서 본다고 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장애인 및 원주민들의 법적문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문제가 악화되기 전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Ⅳ 정책 제언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가. 문제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전체인력 820명 중 변호사는 154명임(반면에 뉴사우스웨일즈주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는 Legal Aid NSW는 1,428명의 직원 중 730명이 변호사로 전체 인력 뿐만 아니라 변호사 인력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비해 많음)

○ 그러나 공익법무관 감소추세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은 2018년 133명에서 2022년 24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1인당 담당 사건수도 2018년 691건에서 2022년 1,007건 크게 증가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법률구조기구와 적극적이 협업·연계 및 계약변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민간법률구조기구와 적극적인 협업·연계

○ 현재 추진 중인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에 다양한 민간법률구조기구들을 참여시키고 플랫폼을 통해 각 기구들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을 연계한다면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더 많은 법률구조 수요를 배분할 수 있어 동시에 법률구조 수요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지원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을 유연하게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법률구조의 필요성은 있으나, 구조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가능한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민간 법률구조기구가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계약변호사 제도 도입 검토

□ 급격한 법률구조 수요 변동에 유연한 대응 가능

○ 내부 변호사 채용으로만 법률구조 수요를 감당하려고 할 경우 급격한 수요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형 참사, 재난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특정 시점에 갑자기 법률구조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신속히 채용 인원을 늘리기 어렵고, 한번 채용 규모를 늘린 경우 이후 법률구조 수요가 감소하여도 인원을 감축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발생

○ 사내 변호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민간에 대한 계약변호사 제도를 보완할 경우 이러한 수요 증감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음

□ **민간의 전문성 활용 가능**

○ 법률구조기구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대응하는 유형의 사건, 소송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내부 변호사로 채용하나, 사내 변호사를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채우기는 어렵고 비효율적

○ 법률구조 수요의 빈도가 낮거나 민간에서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 대하여는 민간 변호사 연계를 통해 보다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플랫폼 역할 강화 필요성

□ **우리나라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중**

○ 호주의 경우 법률상담, 소송대리, 국선변호 등 법률구조서비스가 Legal Aid를 통해 통일적 제공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법률구조기구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 중

○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체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 존재

□ **법률구조 서비스의 안내·연계를 주도할 플랫폼 역할의 기관 필요**

○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여 법률구조제도 안내·연계 등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만 찾으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률구조 서비스라도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3.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 '22. 11.부터 여러 민간 법률구조기구와 TF를 구성하여 실무협의를 진행 중

○ 다만,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 단순히 더 많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호주의 Legal Aid들은 민간로펌 및 기구들과 활발히 협업함과 동시에 참여하는 기구들이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만족도 조사,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또한 참여 법률구조기구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나 준수사항 마련,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구 종사자를 위한 전문성 향상 교육 등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4. 법률구조기구들의 전문성 특화 필요

○ 호주의 법률구조기구들은 서로 겹치는 영역도 있지만 서로 전문분야에 따라 상호 보완하며 법률지원을 실시

○ 한국의 경우에도 법률구조기구들이 서로 전문분야를 가지고 특화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5. 비대면 서비스 강화 필요

○ 코로나 이후, 감염병 예방 목적 또는 다른 사람과 직접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불편해 하는 등의 사유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인원이 증가는 추세

○ 호주의 경우 웹챗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한국에서도 현재 준비 중인 전자접수시스템, 법률구조 플랫폼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

참고문헌

1.「호주의 법률구조제도(2011)」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현욱